

변경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명칭	종류 (클래스)	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(펀드코드: 56288)	A	수수료선취 오프라인	AE273
	A-E	수수료선취 온라인	BG296
	A-G	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	BP130
	C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	AE245
	C-E	수수료미징구 온라인	AS482
	C-G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	BP131
	C-W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	AR355
	C-F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	AE246
	C-P	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	AH290
	C-Pe	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	BG300
	S	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	AP748

2. 주요 변경 내용:

① 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(6.16% → 5.11%), 위험등급 변경 없음(4등급 유지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2.08.30, 2023.02.20 시행) 반영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(2022.08.30 시행) 반영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② 간이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(6.16% → 5.11%), 위험등급 변경 없음(4등급 유지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2.08.30, 2023.02.20 시행) 반영

③ 신탁계약서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(2022.08.30 시행) 반영

3. 변경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신탁계약서

4. 변경시행일: **2023.07.04**

[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	변경 전	변경 후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	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 월까지(<u>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히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<생략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아니오</p> <p>③ <생략></p> <p>④ <생략></p>	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<u>3개 월까지는</u>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<현행과 같음></p> <p><u>③제 2 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: 6개월</u></p> <p><u>2.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: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</u></p> <p><u>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: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(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</u></p> <p><u>④ <현행과 같음></u></p> <p><u>⑤ <현행과 같음></u></p>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<생략>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아니오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<현행과 같음></p> <p><u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(법시행령제 81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

	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 <생략></p>	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)</u>이 지난 후 1개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 <현행과 같음></p>
부칙	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 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 내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 영(2022.08.30 시행)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 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 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 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 (성 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 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 자기구의 경우 <u>2년</u>)이 경과하였음 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 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 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 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 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		
- 투자비용 -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- 운용전문 인력	아니오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 이트
-투자자 유 의사항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 영(2022.08.30 시행)	•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 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 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 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•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<u>2년</u>)이 경과하였 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 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 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 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 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5. 운용전 문인력	아니오	업데이트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 상 - 증권대차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 영(2023.02.20 시행)	<신설>	주 3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. ETF 매매 편의성 증대 : ETF 유 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 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,

관련 주석 추가			<p><u>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,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,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(ETF 해당)</u></p> <p><u>나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 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(모든 공모펀드)</u></p> <p><u>다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(모든 공모펀드 해당)</u></p> <p><u>주 4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(모든 공모펀드 해당)</u></p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- 주석	아니오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2.08.30 시행)</p>	<p>주1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<u>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히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주 2) 주 1)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</p>

			<u>주 2)</u> <u>주 3)</u>	<u>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: 6개 월</u> <u>2.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: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</u> <u>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: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(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</u> <u>주 3)</u> <u>주 4)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-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	아니오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2.08.30 시행)	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.	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<u>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-증권대차 거래 위험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(2023.02.20 시행)	-	<u>증권대차거래 위험 신설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	아니오	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	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(2022년 4월 17일)</u>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<u>연환산 표준편차가 6.16%</u> 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되었습니다.	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(2023년 4월 17일)</u>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<u>연환산 표준편차가 5.11%</u> 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되었습니다.

형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아니오	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업데이트,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등 펀드관련 비용 금액 및 내역 추가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2) 연금저축계좌가입자에 대한 과세	아니오	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(2023.01.01 시행)	<변경 전 1>	<변경 후 1>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1. 재무정보	아니오	업데이트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(2023.02.20 시행)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,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기타수익, 기타비용, 거래비용, 매매회전율 기재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 기준)	아니오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아니오	업데이트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	아니오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

한 사항 나. 임의해 지	(2022.08.30 시 행)	<p>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/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	<p>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<u>(1)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u></p> <p><u>(2)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u></p> <p><u>(3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<u>(4)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기 (3), (4)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. 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)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)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 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 한 사항 가. 정기보	아니오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2.08.30 시 행)	<p>(가) <생략></p> <p>(나)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p>	<p>(가) <현행과 같음></p> <p>(나)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p>

고서 (2) 자산운 용보고서			<p>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~2. <생략></p> <p>3. 집합투자업자가 <u>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</u>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(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p> <p>4. <생략></p> <p>(다)~(라) <생략></p>	<p>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~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 집합투자업자가 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</u>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(<u>같은</u>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p> <p>4. <현행과 같음></p> <p>(다)~(라) <현행과 같음></p>
3. 집합투 자기구의 공시에 관 한 사항 나. 수시공 	아니오	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2.08.30 시 행)	<p>(가)~(사) <생략></p> <p>(아) <u>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</u>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(자) <u>설정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 <p>(차) <생략></p>	<p>(가)~(사) <현행과 같음></p> <p>(아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</u>로 <u>한정</u>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(자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 <p>(차) <현행과 같음></p>
4. 이해관 계인 등과 의 거래에 관한 사항	아니오	업데이트	-	결산에 따른 업데이트

<변경 전 1>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
<u>공제제도</u>	<p>[납입금액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<p>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p> <p>[세액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								
과세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연금 수령 시</td><td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리과세 한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</td></tr> <tr> <td>연금 외 수령 시</td><td>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해지가산세 없음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</td></tr> <tr> <td>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</td><td>연금소득세 5.5%~3.3% 분리과세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득이한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/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)의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/ 가입자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</td></tr> <tr> <td>연금계좌 승계</td><td>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</td></tr> </table>	연금 수령 시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리과세 한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	연금 외 수령 시	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해지가산세 없음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	연금소득세 5.5%~3.3% 분리과세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득이한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/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)의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/ 가입자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	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연금 수령 시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리과세 한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								
연금 외 수령 시	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해지가산세 없음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						
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	연금소득세 5.5%~3.3% 분리과세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득이한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/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)의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/ 가입자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						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								

*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입니다.

* **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※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변경 후 1>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. - 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.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 한도	<u>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</u> <u>연금소득이 1,2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u>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
해지가산세	없음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[소득세법 제 50 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] (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)으로 한정]이 질병 ·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</u>	연금소득세 5.5~3.3%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
<u>연금계좌 승계</u>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입니다.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 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	
- 투자비용 -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- 운용전문 인력	아니오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 이트
-투자자 유 의사항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 영(2022.08.30 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 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2년</u>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